

都市整備局長 林 東 南
 總務課長 李 春 基
 企劃豫算課長 李 殷 圭

(參照)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994. 12. 23

운영위원회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토록 자적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며,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監査 期間

1994. 11. 30.(수) [1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의회사무국

4. 監査實施 經過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기관	사무직원
운 영 위원회	위원장 이봉형 간사 홍성환 위원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홍길표,	마포구의회 사무국 회 실	운영위원	서정길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94.11.30. (수)	마포구의회 사무국	운영위 원회실	증인선서, 업 무보고청취 및 정체질의	

5. 主要監査實施內容

- 의정활동 홍보 및 홍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94예산집행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6. 監査結果 處理意見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정활동 홍보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나. 전의사항

-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활용을 전의함.

다.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95. 1.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전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994. 12. 22.

총무재무위원회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토록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편의를 도모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監査期間

1994. 11. 30.(수)~1994. 12. 6.(화) [7일
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3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아현3동, 용강동, 상암동, 합정동)

4. 監査實施 經過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기관	사무직원
총무재무 위 원 회	위원장 김유현 간 사 김문태 위 원 김성환, 심재창, 유남렬, 조희태, 이봉형, 채운석, 황태식	3실, 총무국, 재무국, 아현3동, 용강동, 상암동, 합정동	총무재무 위원회실, 동사무소	서정길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94. 11. 30. (수)	총 무 국 문화 공 보 실, 감 사 실, 시 민 봉 사 실	총무재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 무보고 청취 및 정체질의	
'94. 12. 1. (목)	총 무 국	총무재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 무보고 청취 및 정체질의	
'94. 12. 2. (금)	아 현 3 동, 용 강 동	각 동사 무소	증인선서, 업 무보고 청취 및 정체질의	
'94. 12. 5. (월)	상 암 동, 합 정 동	각 동사 무소	증인선서, 업 무보고 청취 및 정체질의	
'94. 12. 6. (화)	재 무 국	총무재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 무보고 청취 및 정체질의	

5. 主要監査實施內容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문화공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및 구정 홍보신문 구 독대상자 선정과 구독료 지 출현황 및 문제점 ○ 어머니합창단 현황 및 지원 대책 ○ 구민의날 행사 및 예산지원 의 문제점 ○ 불법 및 음란 비디오 단속 현황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각종감사(자체감사 포함)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환경순찰 현황
시민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령 전화민원 현황 ○ 이동민원실 운영 현황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및 '95계획 ○ 근무복 착용의 문제점과 대책 ○ 동사무소 숙직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통·반장 현황 및 결원에 따른 충원계획 ○ 구민회관 전립 추진현황
기획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무현황 및 폐소원인 분석 ○ '95예산편성 현황
국 민 운 동 지 원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및 미회 수금 조치 현황 ○ 새마을이동문고 운영현황 ○ 유관단체 지원현황
생활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활 용계획 ○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지원 계획
민 방 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정호 관리현황 ○ 방범비상벨 설치현황 ○ 민방위 제신고 불이행자 처 리현황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 수입증지 판매수입 현황 ○ '94수의계약 현황 ○ 세외수입 현황
세무 1,2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 징수실적 및 결손처분 현황 ○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 ○ 감사 지적에 따른 누락분 지방세 현황 및 조치사항
토지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현황 ○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동사무소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홍보지 구독 대상자 및 홍보지 배포 상태 ○ 통·반장 현황 및 결원 발생시 충원 계획 ○ 반상회 개최현황 ○ 재활용 추진협의회 운영현황 ○ 행정재산 및 정수물품 관리 현황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및 미회 수금 조치 현황 ○ 환경미화원 근무상황부 관리 현황 ○ 민방위대원 관리 상태 ○ 방범 비상벨 설치 현황 ○ 구민의날 행사 지원금 사용 현황 및 정산여부
아현 3동	○ 공동경호 관리 현황
용강동	○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상암동	○ 보안등 수리비 과다지출 원인과 대책
합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호 3곳 관리현황 ○ 양화진 체련장 관리현황

6. 監査結果 處理意見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3실 및 총무국 소관

가) 문화공보실

- 시정홍보지 구독료 지출은 배달여부를 확인후 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확인으로 부당지출 하고 있는 바, 향후 배달확인을 철저히 함은 물론 구독대상자 선정에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불법 및 음란 비디오 단속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철저히 하여야 함.
- 향토 문화예술의 활성화 조치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됨.
- 구정 홍보를 반상회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나) 감사실

- 감사를 실적위주로 치우치지 말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을 철저히 하여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 시민봉사실

- 전화민원 처리에 따른 손실경감을 위하여 민원접수시 반드시 찾아가도록 안내하는등 대책을 강구할 것.

라) 총무과

- 반상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며 숫자적으로만 개최율을 겨양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비거주 통장 위촉으로 통장업무 수행 차질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나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 동사무소 숙직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바람.
- 고액 물품구매 수의계약 전수가 총무과에 편중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이 되도록 시정할 것.

마) 기획예산과

- 송무업무에 대한 실무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폐소에 의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소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개발 및 복지행정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법을 개발바람.

바) 국민운동지원과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미환수금에 대한 환수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편중된 혜택이 되지 않고 고루 수혜 되도록 조치할 것.

사) 생활체육과

- 각지역 유휴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바람.

아) 민방위과

- 비상벨 설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원하는 주민은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 비상공동정호는 비상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현재 음용 불가한 정호는 대책을 마련하여 식수 가능토록 조치 바람.

2) 재무국 소관

가) 재무과

- 해마다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여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 조치할 것.
- 국·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세외수입에도 기여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

나) 세무 1,2과

- 지방세체납은 늘어나는데 징수가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세원 누락방지 대책을 강구 세수증 대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다) 토지관리과

- 형식적인 부동산증개업소 단속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단속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3) 동사무소 소관

가) 각동공통

- 시정홍보지 구독대상자에게 홍보지 구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여 본인이 홍보지 구독대상자임을 알고 있도록 조치할 것.
- 시정홍보지 구독료 지급은 배달확인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부당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배달확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 환경미화원 출근상황부 정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출근 확인이 되도록 조치할 것.

나) 전의사항

- 1) 구민회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바람.
- 2) 구민관련 행사에 주민들에게 기부금 모금 행위가 균절 되도록 대책강구 바람.
- 3) 합리적인 구행정을 위하여 획기적인 직제개편 검토 바람.
- 4) 제도개선 및 직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지속적 예방검사, 동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전동을 감사실시 바람.

다) 처리사항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95. 1.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전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其他 特記事項

○ 수범사례

아현제3동의 생활개혁 동행정 특수사업인 "동 구역별 지번 표지판 제작부착"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전동에 확산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되어야 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994. 12. 23

시민보건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4. 11. 30.(수) —— 1994. 12. 6.(화)

[7일간]

3. 감사실시대상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보건소)

○ 동사무소(아현제2동, 신공덕동, 동교동, 망원제1동)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기관	사무직원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 김동희 간사 홍길표 위원 김상열, 박주서, 송운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시민국, 보건소, 아현제2동, 신공덕동, 동교동, 망원제1동	시민보건 위원회실, 아현제2동, 신공덕동, 동교동, 망원제1동	조황현

나. 감사일정

일 자	감시대상부서	감 사 장 소	감 사 방 법
'94.11.30. (수)	아현제2동 신공덕동	아현제2동사무소 신공덕동사무소	증인선서, 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 서류감사
'94.12. 1. (목)	망원제1동 동교동	망원제1동사무소 동교동사무소	증인선서, 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 서류감사
'94.12. 2. (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시민보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 서류감사
'94.12. 5. (월)	환경과 청소과	시민보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 서류감사
'94.12. 6. (화)	보건소	시민보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 서류감사

5. 주요감사내용

감사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사회복지과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따른 심사내역 ○ 생업자금융자가 실제로 도움

감사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감사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되는지 여부 ○ 이웃돕기 모금 현황 ○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성품 구입 방법 ○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운반비 적정사용 여부 ○ 노임소득취로사업 동별 추진 현황 ○ 취로사업 실시에 따른 감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양곡 회수가 잘되고 있는지 여부 ○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의 조치 여부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정수리비 사용내역 ○ 구민안뜰장의 필요성 여부 ○ 노령수당 지급부서의 적정 및 지급일의 경과 여부 ○ 노인건강진단 실시기관 및 실시의 적정성 여부 ○ 경로승차권 배부시기 조정 가능 여부 ○ 구민복지시설의 편중 이유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의 날 행사 실적 및 효과 ○ 자동차 배기ガ스 단속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 ○ 공해감시위원회 및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의 활성화 ○ 노상세차장의 환경 오염에 따른 단속 대책 ○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 대책 ○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 공해단속대장의 관리 상태 ○ 난지도침출수 및 하천채수 검사 의뢰 여부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반발이 있었는지 여부 ○ 모든 이용업소의 모범업소 지정의 타당성 여부 ○ 포장마차의 불결한 위생상태의 해결 방법 ○ 자판기(음료자판기)관리 상태 ○ 단란주점의 칸막이의 허용 여부 	청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원의 적합성 여부 ○ 환경미화원의 조장제도의 필요성 여부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 여부 ○ 청소대행업체의 감독 여부 ○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의 감독 여부 ○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수립 여부 ○ 1회용컵 수거를 위한 동사무소 점검 여부 ○ 가로청소원의 청소차량 대체 여부 ○ 환경미화원 봉급명세서가 수작업으로 되고 있는 이유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가스통 관리 상태 ○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의 필요성 여부 ○ 주유소 허가의 적정성 여부 ○ 연료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 도시가스사업기금 용자 실적 저조에 따른 향후 대책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막소독의 필요성 여부

감사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감사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즈(AIDS)환자 관리 ○ 민원 접수 처리 내역 ○ 물리치료사 수리의 입찰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는지 여부 ○ 노인건강진단의 보건소 수용 여부 ○ 보건소 업무 홍보 ○ 물리치료실 이용 홍보 ○ 병·의약업소 지도 점검 내역 ○ 방문진료대상자 선정 방법 	망원제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이용률 저조에 따른 홍보 여부
아현제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사역카드 관리 상태 ○ 효행상수상자 공적내용 ○ 경로승차권배부대장 날인 여부 ○ 취로포기각서를 받는 이유 ○ 대여양곡이 10년이 넘도록 미상환된 이유 ○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 ○ 1회용컵의 재활용 여부 ○ 노령수당 지급이 늦어진 이유 ○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 여부 ○ 새마을단체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 구민알뜰장의 필요성 여부 ○ 보건소이용률 저조에 따른 홍보 여부 	동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원의 적정성 여부 ○ 재활용품 판매대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 심신장애인 등록대장 관리 상태 ○ 노인건강진단 실시 대상자 명단 관리 상태 ○ 정부대여양곡 마상환자 관리 상태 ○ 환경미화원 조장제도의 필요성 여부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의 적정성 여부 ○ 취로증 본인 휴대 여부 ○ 중추절,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방법 ○ 청소수하차 수선비 일괄 지급의 타당성 여부
신공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로증의 본인 자참 여부 ○ 구호양곡배부대장 정리를 제때에 했는지 여부 ○ 민속놀이시 특정인에게 성금을 거두었는지 여부 ○ 새마을단체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6. 검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시민국 소관

- 거액보호자 구호양곡운반비를 각동에 배정하였으나 운반인부가 배달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대책을 수립할 것.
- 정부대여양곡이 10년이 지나도록 미상환되고 있는데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긴급구호양곡을 지급하고 긴급구호조사 복명 및 양곡지급결의서등 공부관리가 부실한 바 직원교육을

- 철저히 하여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사역카드에 본인이 출근하여 날인하게 되어있으나 작업조장이 일괄 날인하고 있어서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보호대상자 연명부에 낙서를 하는등 대장관리가 소홀하므로 각종 대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취로증을 취로시마다 취로자가 소지하여 취로가 끝난 후에 취로시간을 확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일괄보관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노인건강진단자 명단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강진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취약시간대 공해업소 단속을 하면서 미리 업소의 공휴일 여부를 확인치 않고 출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실질적인 공해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원이 대부분 통장들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바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재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청소수하차수리비를 작업조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포장마차 위생 문제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바 점검계획과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주택가 L.P.G통 관리가 허술하여 화재염려가 있는 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도·농간자매결연 교류사업을 하는데 외국농산물을 수입하여 그 지역농산물인양 팔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확인을 철저히하여 우리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서강대학교앞 주유소는 학생시위때 화재발생 우려를 고려치 않고 허가하였는바 화재예방대책을 수립도록 할 것.
- 에너지 소비 절약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대상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소비량을 파악한 후 절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공해감시위원회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해감시위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폐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상세차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노상세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대행업체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가 심한데 감독을 철저히하고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나. 전의사항

1) 시민국 소관

- 구민이 얼마 안되는 경로승차권을 수령하기 위하여 시간낭비가 많은데 석달에 한번이 아닌 1년에 한번 줄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전의하기 바람.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와 노령수당지급 부서가 상이하여 업무 중복을 초래하는 바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의하기 바람.

2) 보건소 소관

-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고 살충·살균효과가 미미한데 분무소독이나 다른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의하기 바람.
- 보건소의 약무직 인원 채용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서 특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의하기 바람.

다. 처리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5. 1. 31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994. 12. 22.

도시건설위원회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 期間

1994. 11. 30(수)~1994. 12. 6(화)[7일간]

3. 審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 동사무소(대흥동, 성산2동)

4. 監査實施 經過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기관	사무적원
도시건설	위원장 김종열	도시정비국,	도시건설	신승관
위원회	간사 윤명규 위원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건설국, 대흥동, 성산2동	위원회실, 동사무소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대상장소	감사방법	비 고
'94.11.30. (수)	도시정비국 건설국	도시건설 위원회실	증인선서, 현 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94.12. 1. (목)	대흥동 사무소	대흥동 사무소	증인선서, 현 황보고 청취 감사실시	
'94.12. 2. (금)	성산2동 사무소	성산2동 사무소	증인선서, 현 황보고 청취 감사실시	
'94.12. 5. (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건설 위원회실	현황보고 청 취, 자료요 구, 정책질 의	

일자	감사대상부서	대상장소	감사방법	비고
'94.12. 6. (화)	전 설 관리과 토 목 과 하 수 과 공 원 녹 지 과	도 시 전 설 위 원 회 실	현 황 보 고 청 취, 자료요 구, 정책질 의	

5. 主要監査實施內容

가. 소관별 실시내용

1) 도시정비국 소관(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방 지 및 처리대책 ○ 재개발 및 재건축업무 처리 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 선대책 ○ 난지도 조립식주택 거주자들 의 이주대책 ○ 도화지구 재건축 이주자 대책
도 시 정 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난립으로 미관이 저해되 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 광고업자 교육 방안 ○ 체비지 현황 및 향후 관리 대책
지 역 교 통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의 문제 점 및 향후 징수대책 ○ 직원들이 민원전화를 기피하 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차단속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위탁주차장의 입찰유찰에 대 한 문제점 및 향후보완대책 ○ 주차 차고지증명 제도의 문 제점 및 향후 보완대책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내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 및 향후대책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구 제방안 ○ 감리자 교육방안
지 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획정리후 구번지를 쓰고 있는 곳의 향후대책

2) 전설국 소관(전설관리과, 토목과, 하
수과, 공원녹지과)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전 설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노상적치물(불법가설물) 단속현황 및 향후 단속대책 ○ 포장마차 단속현황 및 재발 방지대책 ○ 도로점용료 체납현황 및 체 납일소 방안 ○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시 주민과의 마찰해소 방안 ○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나팔 관) 및 불법 나팔관 처리 방안
토 목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시설 설치시 공동구 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 겨울철 제설대책 ○ 도로굴착후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관리대책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원동 유수지 활용방안 ○ 하수도 준설등 유지관리 방안
공 원 녹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식재 방법의 문제점 및 식재시 감독소홀로 가로 수가 고사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가로수 관리 대책 ○ 녹지대 접용허가에 대한 문 제점

3) 동사무소(대홍동, 성산2동)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대 홍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후 미준공된 건물현황 및 향후대책 ○ 15평이하 중개축 신고 업무의 적정처리 여부 ○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 및 향후 단속대책 ○ 골목길주차로 인한 제반 문제점 및 향후대책(청소부실 등) ○ 동사무소 정원과 업무의 형평성 ○ 보안등 수리가 지연되는데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관리 대책 ○ 동사무소 광고물 신고 업무의 숙지여부
성 산 2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평이하 중개축 신고 업무의 적정처리 여부 ○ 자동차 정비단지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정비대책 ○ 맨홀 빗물받이등 하수도 준설에 따른 문제점 ○ 국공유지 점용허가에 대한 담당직원의 업무숙지여부

6. 監查結果 處理意見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시정비국 소관(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가) 주택과 소관

-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바,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대책을 수립할 것.

나) 도시정비과 소관

- 동사무소 광고물 신고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숙지도가 미흡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 광고물 신고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다) 지역교통과 소관

- 불법 주차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미흡한 바,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주차단속시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바,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마찰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라) 건축과 소관

- 동사무소 건설팀당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중개축 신고등)가 미흡하여 건축행정에 차질이 있는 바, 각종 건축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 건축행정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

2) 건설국 소관(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가) 건설관리과 소관

- 도로 노상적치물(불법가설물)단속이 미흡한 바, 철저한 단속대책을 수립하여 도시미관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포장마차 단속에 있어 재발생등 단속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나) 토목과 소관

- 보안등 보수 및 관리가 부실한 바,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다) 하수과 소관

- 짐중호우시 아직도 오수로 인한 침수지역이 있는 바, 하수도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하철기 수방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라) 공원녹지과 소관

- 가로수 식재가 부실하여 가로수 고사율이 높은 바, 고사목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녹지대 가설물 점용허가등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숙지도가 미흡하여 녹지대 관리가 부실한 바, 관련공무원들의 교육계획등 제반 녹지대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녹지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나. 전의사항

- 1) 재개발 및 재건축업무가 관련공무원들의 기피업무가 되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원 및 업무조정등을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2) 주차차고지증명제도가 현시점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사료되는 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급부서에 건의하기 바람.

다.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5. 1. 31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전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9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1994. 12. 2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26회의회(정기회) 제8차위원회('94.12.2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최영명

-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매각 —— 7필지

소재지	지목	지적(m ²)	매각시기	매각사유
계		571중 48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0호
신공덕동 21-10	대	35중 12	상·반기	
" 130-87	대	20	"	"
" 130-106	대	380	"	"
" 130-116	도로	46	"	"
" 133-74	대	4	"	"
" 138-27	대	63중 1	"	"
" 145	대	23	"	"